

#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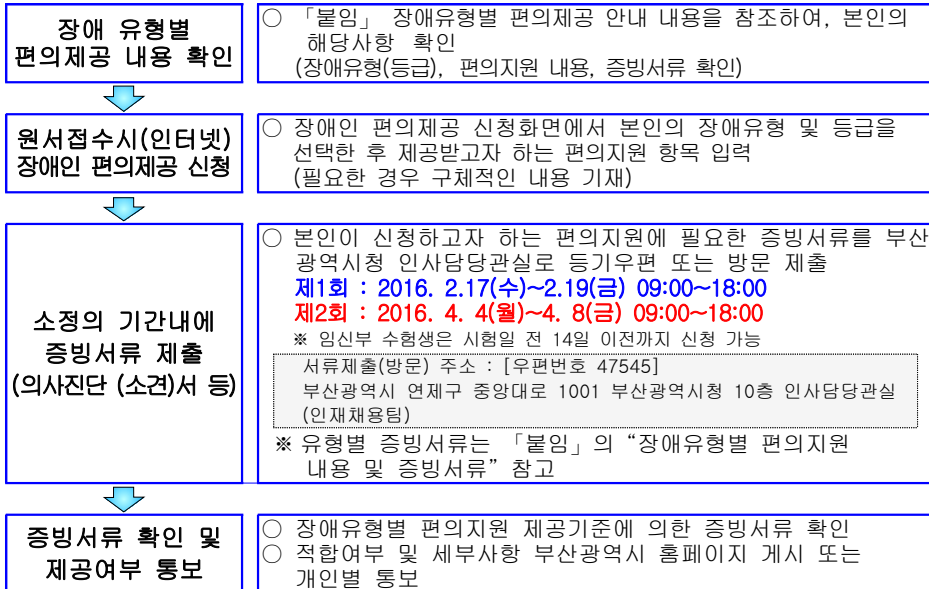
## I. 적용시험

- 2016년도 제1, 2회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
  - ※ 시 자체 시험문제 출제직렬에 대해서는 제한됨(점자문제지, 음성지원 등), 단 임신부는 모든 시험 적용

## II. 지원대상

-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
 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 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

## III. 신청절차



## IV.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-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은 **응시원서 접수시**(<http://local.gosi.go.kr>) **입력**하고, 관련 증빙서류만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(0급0호)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**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.
  - ※ **종합병원 여부 확인**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 → [병원 및 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
- ‘15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중 **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**에 한해 증빙서류(의사진단(소견)서) 제출을 면제합니다.
  - ※ ‘14년도 이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자는 금년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증빙서류 우편접수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.
- 전화문의 :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 (051-888-1971~5)

### <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예	시
시각장애	3급2호 4급2호	상기인은 <b>시각장애 3급2호</b> 이며 <b>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료서,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</b> 됩니다.
	6급	상기인은 <b>시각장애 6급</b> 이며 <b>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에 해당하는 자료서,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</b> 됩니다.
뇌병변장애	경증	상기인은 <b>뇌병변장애 4급</b> 이며 <b>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료서</b>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<b>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</b> 됩니다.
기타	상기인은 <b>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료서</b>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<b>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</b> 됩니다.	

장애유형(등급)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
시각장애	- 1급~2급 - 3급2호,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	시험시간 1.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	3급2호,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부
		점자답안지, 확대문제지·답안지 축소문제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
	3급 4급 5급 6급	시험시간 1.5배 연장 -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-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	시각장애6급은 의사진단서 1부
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
뇌병변 · 지체장애	중증 뇌병변 (1급~3급) 중증 상지지체 (1급~3급)	시험시간 1.5배 연장 대필(선택형 시험)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	경증 뇌병변 (4급~6급)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		시험시간 1.5배 연장	의사진단서 1부
	경증 상지지체 (4급~6급)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	하지지체	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	없음
청각장애	2급~6급	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
기타장애	- 특수 및 중복장애 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※시험시간 연장은 불가	의사소견서 1부
	임신부	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	의사소견서 1부

## &lt; 참고사항 &gt;

- 화장실 사용 :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- 확대문제지 : 견고딕 18Point(150%확대) 문제지 제공
- 확대답안지 : A3규격 답안지 제공(통상답안지 216×305mm)
- 축소문제지 : A4규격의 82%(10포인트)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- 시험시간 연장 : 약1.5배(7급 70분, 9급 50분), 약1.7배(7급 100분, 9급 70분)
- ※ 시험시간연장으로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후 재입실 가능  
(단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)
- 동행 보호자 : 시험실 입실은 제한, 시험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